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63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6. 27.

최두임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5. 7. 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5. 7. 16.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최두임 의원)

가. 개정이유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 간 표현과 용어를 통일하고, 법령 인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제공·생활지도 → 제공, 생활지도(안 제3조제1호)
- 활동의 공간제공 → 활동 공간 제공(안 제3조제1호)
- 해당될 → 해당하는(안 제6조)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안 제8조)

2) 법령 인용 조항의 표기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안 제5조제1항제1호나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3) 불필요한 문구 삭제 (별표)

- 상기 요금표 상의 선수(단)는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 관련 대회 참가 선수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삭제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 2)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35호
 - 예고기간: 2025. 6. 27.(금) ~ 7. 3.[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 개정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 간의 표현과 용어를 통일하고, 법령 인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안 제3조) 유스호스텔의 기능에 관한 내용 중 문장 부호 변경과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음
- (안 제5조) 사용료 감면 사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인용 법령 조항을 명확히 적용하였음
- (안 제6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중 조문 간 단순 표현을 정비하였음.
- (안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인용한 법령의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음.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앞두고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알기 쉬운 문구와 띄어쓰기로 정비하고, 법령 인용 조항의 표기를 정비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시행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7. 16. 수정가결

- 붙 임 1.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제안서

의안번호	제2963호 관련
------	--------------

제안연월일	2025. 7. 16.
발 의 자	이정숙 의원

1. 수정이유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된 청소년 수련시설로 별표의 “컨벤션홀의 예식장 사용”은 시설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부적합하므로 고성군 유스호스텔의 올바른 기능을 위하여 수정함.

2. 수정내용

별표의 ○ 컨벤션홀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요금 적용함.
을 삭제한다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현 행)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제4조 관련)

구 분		요 금(원)									비 고 (객실 규모)
		주중(월~목)			주말(금,토,공휴일)			성수기(7.20.~8.31.)			
		선수(단)	청소년	일반	선수(단)	청소년	일반	선수(단)	청소년	일반	
객 실	1인실	32,000	32,000	46,000	46,000	46,000	66,000	53,000	53,000	76,000	21.18㎡
	2인실 (장애인실)	102,000	102,000	146,000	146,000	146,000	209,000	168,000	168,000	240,000	45.49㎡
	4인실	119,000	119,000	171,000	170,000	170,000	244,000	196,000	196,000	280,000	45.83㎡
	6인실	140,000	140,000	201,000	201,000	201,000	288,000	231,000	231,000	330,000	45.83㎡
		162,000	162,000	232,000	231,000	231,000	331,000	266,000	266,000	380,000	52.38㎡
	10인실	247,000	247,000	354,000	354,000	354,000	506,000	406,000	406,000	580,000	67.89㎡
		325,000	325,000	465,000	464,000	464,000	663,000	532,000	532,000	760,000	106.41㎡
		449,000	449,000	642,000	641,000	641,000	916,000	735,000	735,000	1,050,000	113.35㎡
	컨벤션홀		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								
중회의실		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									103.62㎡
소회의실		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									85.02㎡
		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									52.60㎡
기 타		○ 상기 요금표 상의 선수(단)는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 관련 대회 참가 선수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 컨벤션홀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요금 적용함. ○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개정안) <2025. 00. 00.>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제4조 관련)

구 분		요 금(원)									비고 (객실 규모)
		주중(월~목)			주말(금,토,공휴일)			성수기(7.20.~8.31.)			
		선수(단)	청소년	일반	선수(단)	청소년	일반	선수(단)	청소년	일반	
객 실	1인실	32,000	32,000	46,000	46,000	46,000	66,000	53,000	53,000	76,000	21.18㎡
	2인실 (장애인실)	102,000	102,000	146,000	146,000	146,000	209,000	168,000	168,000	240,000	45.49㎡
	4인실	119,000	119,000	171,000	170,000	170,000	244,000	196,000	196,000	280,000	45.83㎡
	6인실	140,000	140,000	201,000	201,000	201,000	288,000	231,000	231,000	330,000	45.83㎡
		162,000	162,000	232,000	231,000	231,000	331,000	266,000	266,000	380,000	52.38㎡
	10인실	247,000	247,000	354,000	354,000	354,000	506,000	406,000	406,000	580,000	67.89㎡
		325,000	325,000	465,000	464,000	464,000	663,000	532,000	532,000	760,000	106.41㎡
		449,000	449,000	642,000	641,000	641,000	916,000	735,000	735,000	1,050,000	113.35㎡
컨벤션홀		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									569.19㎡
중회의실		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									103.62㎡
소회의실		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									85.02㎡
		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									52.60㎡
기 타		○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 컨벤션홀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요금 적용함. ○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수정안) <2025. 00. 00.>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제4조 관련)

구 분		요 금(원)									비 고 (객실 규모)
		주중(월~목)			주말(금,토,공휴일)			성수기(7.20.~8.31.)			
		선수(단)	청소년	일반	선수(단)	청소년	일반	선수(단)	청소년	일반	
객 실	1인실	32,000	32,000	46,000	46,000	46,000	66,000	53,000	53,000	76,000	21.18㎡
	2인실 (장애인실)	102,000	102,000	146,000	146,000	146,000	209,000	168,000	168,000	240,000	45.49㎡
	4인실	119,000	119,000	171,000	170,000	170,000	244,000	196,000	196,000	280,000	45.83㎡
	6인실	140,000	140,000	201,000	201,000	201,000	288,000	231,000	231,000	330,000	45.83㎡
		162,000	162,000	232,000	231,000	231,000	331,000	266,000	266,000	380,000	52.38㎡
	10인실	247,000	247,000	354,000	354,000	354,000	506,000	406,000	406,000	580,000	67.89㎡
		325,000	325,000	465,000	464,000	464,000	663,000	532,000	532,000	760,000	106.41㎡
		449,000	449,000	642,000	641,000	641,000	916,000	735,000	735,000	1,050,000	113.35㎡
	컨벤션홀		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								
중회의실		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									103.62㎡
소회의실		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									85.02㎡
		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									52.60㎡
기 타		○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두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63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최두임, 허옥희, 김향숙,
정영환, 이쌍자, 우정욱의원
(6인)

1. 개정 이유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 간 표현과 용어를 통일하고, 법령 인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제공·생활지도 → 제공, 생활지도(안 제3조제1호)
- 활동의 공간제공 → 활동 공간 제공(안 제3조제1호)
- 해당될 → 해당하는(안 제6조)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안 제8조)

나. 법령 인용 조항의 표기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안 제5조제1항제1호나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다. 불필요한 문구 삭제 (별표)

- 상기 요금표 상의 선수(단)는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 관련 대회 참가 선수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삭제
- 컨벤션홀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요금 적용함. →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 2025-35호

- 예고기간: 2025. 6. 27.(금) ~ 7. 3. [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공·생활지도”를 “제공, 생활지도”로, “활동의 공간제공”을 “활동 공간 제공”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될”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고성군 유스호스텔이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 편의 <u>제공·생활지도</u> 및 자연체험 <u>활동의 공간제공</u>	1. ----- -- <u>제공, 생활지도</u> ----- -- <u>활동 공간 제공</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감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감면) ① ----- ----- ----- ----- --.
1. 전액 감면	1.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 」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 할 때	나. 「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 」 제3조제1호----- ----- ----- -----
2. 반액 감면	2. -----
가.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8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u>자</u>	가. 「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4조에 따른 <u>국가유공자</u>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3.·4. (생 략)

② (생 략)

제6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 3. (생 략)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반환) -----
----- 해당하는 -----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운영)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

-----.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현행)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제4조 관련)

구 분		요 금(원)									비 고 (객실 규모)
		주중(월~목)			주말(금,토,공휴일)			성수기(7.20.~8.31.)			
		선수(단)	청소년	일반	선수(단)	청소년	일반	선수(단)	청소년	일반	
객 실	1인실	32,000	32,000	46,000	46,000	46,000	66,000	53,000	53,000	76,000	21.18㎡
	2인실 (장애인실)	102,000	102,000	146,000	146,000	146,000	209,000	168,000	168,000	240,000	45.49㎡
	4인실	119,000	119,000	171,000	170,000	170,000	244,000	196,000	196,000	280,000	45.83㎡
	6인실	140,000	140,000	201,000	201,000	201,000	288,000	231,000	231,000	330,000	45.83㎡
		162,000	162,000	232,000	231,000	231,000	331,000	266,000	266,000	380,000	52.38㎡
	10인실	247,000	247,000	354,000	354,000	354,000	506,000	406,000	406,000	580,000	67.89㎡
		325,000	325,000	465,000	464,000	464,000	663,000	532,000	532,000	760,000	106.41㎡
		449,000	449,000	642,000	641,000	641,000	916,000	735,000	735,000	1,050,000	113.35㎡
컨벤션홀		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									569.19㎡
중회의실		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									103.62㎡
소회의실		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									85.02㎡
		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									52.60㎡
기 타		○ 상기 요금표 상의 선수(단)는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 관련 대회 참가 선수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 컨벤션홀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 별도 요금 적용함. ○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개정안) <2025. 00. 00.>

고성군 유스호스텔 사용료(제4조 관련)

구 분		요 금(원)									비 고 (객실 규모)
		주중(월~목)			주말(금,토,공휴일)			성수기(7.20.~8.31.)			
		선수(단)	청소년	일반	선수(단)	청소년	일반	선수(단)	청소년	일반	
객 실	1인실	32,000	32,000	46,000	46,000	46,000	66,000	53,000	53,000	76,000	21.18㎡
	2인실 (장애인실)	102,000	102,000	146,000	146,000	146,000	209,000	168,000	168,000	240,000	45.49㎡
	4인실	119,000	119,000	171,000	170,000	170,000	244,000	196,000	196,000	280,000	45.83㎡
	6인실	140,000	140,000	201,000	201,000	201,000	288,000	231,000	231,000	330,000	45.83㎡
		162,000	162,000	232,000	231,000	231,000	331,000	266,000	266,000	380,000	52.38㎡
	10인실	247,000	247,000	354,000	354,000	354,000	506,000	406,000	406,000	580,000	67.89㎡
		325,000	325,000	465,000	464,000	464,000	663,000	532,000	532,000	760,000	106.41㎡
		449,000	449,000	642,000	641,000	641,000	916,000	735,000	735,000	1,050,000	113.35㎡
컨벤션홀		571,000원(1시간), 2,000,000원(4시간), 3,400,000원(1일)									569.19㎡
중회의실		75,000원(1시간), 264,000원(4시간), 448,000원(1일)									103.62㎡
소회의실		53,000원(1시간), 187,000원(4시간), 317,000원(1일)									85.02㎡
		42,000원(1시간), 150,000원(4시간), 255,000원(1일)									52.60㎡
기 타		○ 객실 사용 시 1.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2. 사용 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한다. 3.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감면은 성인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함. ○ 상기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관 계 법 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20. 5. 19.>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5. 1.>

[전문개정 2011. 11. 18.]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12. 12.]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

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2024. 1. 16.>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